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19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272,432원 및 그 중 99,382,662원에 대하여 2022. 4. 7.부터 2022. 6. 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2021.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1. 11. 25. 접수 제169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강길연

청 구 원 인

1. 원고기금의 법적지위

원고 기술보증기금(이하 원고기금이라고만 합니다)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기술보증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2. 신용보증 및 대출내용

원고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 이라고 함)의 보증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동 A이 중소기업은행 제천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바 있고, 피고 A은 아래 보증서에 기하여 위 채권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보증번호	발급일자	거래은행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기한연장)	
D	2015. 03. 10	중소기업은행	2016. 03. 09.	100,000,000
			(2022. 03. 04)	

{위 보증건의 당초보증기한 2016. 3. 9.이었으나 피고 (주)A의 보증기한연장요청에 따라 2022. 3. 4.까지로 기한연장되었습니다}

3. 신용보증계약

가. 원고기금의 위 신용보증은 원고와 피고 A과의 사이에 체결된 다음과 같은 신용

보증약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원고가 주채무 변제기한(분할상환금 상환기간 포함)내 주채무(분할상환금 포함)의 미변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는다는 약정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한편, 위 보증약정의 내용 중에는 피보증인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사전구상 제1항 제2호), E기관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제1항 제7호),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1항 제8호)에는 신용보증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의 통지나 최고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참조).

다. 연대보증인의 입보

피고 (주)A의 대표인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건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갑제 2호증(신용보증약정서) 참조}

4. 구상채권의 발생 (대위변제)

가. 피고 (주)A은 위 대출을 실행 받은 이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앞선 위 2항 기재와 같이 기한연장을 거쳐 오던 중 2022. 1. 11.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보증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나. 한편 원고기금은 채권기관(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보증건에 관하여 2022. 4. 7. 금 99,382,662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갑제 3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제 4호증(보증채무이행청구서), 갑제 5호증(대위변제증서) 각 참조}

5. 대지급금

원고기금은 이 사건 보증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금 754,16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갑제 6호증(구상채권원장) 참조}

6. 추가보증료

이 사건 보증건에 관하여 금 135,61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제6호증(구상채권현황) 참조}

7. 지연손해금율

원고기금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연8%입니다.

8. 소 결 어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272,432원[금 99,382,662원(대위변제금) + 금 754,160원(대지급금) + 금 135,610원(추가보증료)] 및 그 중 금 99,382,662원(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22.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8. 손해행위취소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 (주)A은 재활용업, 투구블럭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나. 한편 피고회사는 앞서와 같이 이 사건 보증건을 실행받은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수차에 걸친 기한연장을 거쳐 오던 2022. 1. 11,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다. 사정이 이러하자, 피고 (주)A은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와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기 불과 47일 전인 2021. 11.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 1690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 (주)A으로 하여금 무자력의 상태를 초래케 한 사안입니다.

라. 보증사고 이후 원고기금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 피고 (주)A은 이 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기도 합니다.
{갑제 8호증(채무관계자재산조사표) 참조}

마.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이른 사실에 대한 사실회신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도 합니다.

바. 즉, 피고 (주)A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앞서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47일전),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유일한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경료 해 줌으로서 공동담보의 감소 내지 상실을 초래한 사안으로 이는 달리 볼 것 없이 원고 및 다수의 채권자를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평가

① 적극재산

사해행위 당시 피고 (주)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경상북도 성주군 F 임야 95㎡가 전부였습

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F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지가로 산정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금 652,002,350원¹⁾ 남짓이 됩니다.

(위 각 적극재산에 대한 2020. 6. 12.자 거래가액은 600,000,000원이었기도 합니다)

② 소극재산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갑제 9호증(신용정보조회서)상 나타난 순수 금융권채무만 하더라도 금 581,825,000원²⁾에 이르고 있고, 그 외 피고 C(주)의 근저당권 피담

1) 경상북도 성주군 G 공장용지 2197㎡

(토지) 2197㎡ × @ 160,500원 = 금 352,618,500원

2) 경상북도 성주군 G

(건물) 공시지가 : 160,500원, 지역번호 : 6 / 88, 구조번호 : 4

단층 공장 765㎡ × @ 391,000 (4, 80) = 금 299,115,000원

3) 경상북도 성주군 F 95㎡

(토지) 95㎡ × @ 2830원 = 금 268,850원

목적물가액 : 금 652,002,350원

2) ① 기업은행 제천지점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보채무 100,000,000원 및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청구금액 25,000,000원 등을 더할 경우 피고 (주)A의 소극재산의 가액은 706,825,000원 남짓에 달하고 있어 사해행위 당시 피고 (주)A의 채무초과의 점은 명백하기도 합니다.

[갑제 9호증(신용정보공동망조회서) 참조]

9. 관할법원의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서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에 따라 소송관할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10.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주)A,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구상채무의 이행율, 사해행위 수익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자 부득이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② 기업은행 제천지점 신용카드연체액 1,475,000원

③ H조합 대출금 채무(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금) 405,000,000원

④ H조합 대출금 채무 50,350,000원

⑤ I은행 김천지점 대출금 채무 25,000,000원

합계액 581,825,000원

별 지 목 록

1. 경상북도 성주군 공장용지 2197㎡

2. 경상북도 성주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위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1층 공장 765㎡

